

안전인증소식

[Q&A]

전기용품 · 공산품 안전인증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KC마크, 자율안전확인제도」 등이 신규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해야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응답을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 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 주의 : 본 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협회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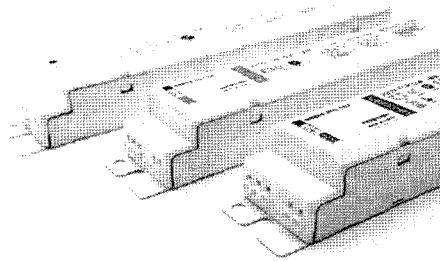
〈편집자주〉

Q uestion 안정기부착 소켓의 파생모델 등록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① '소켓이 부착된 안정기' 가 아니라 '안정기가 부착된 소켓' 을 만들려고 하는데 소켓의 파생 모델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 ② 전자식안정기의 제조업체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지?
- ③ 파생모델로 제조하기 위하여 부품인 안정기의 제조자를 전부 인증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 ④ 부품인 전선이나 합성수지의 제조자와 재질을 전부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인증기관에서 동등한 부품일 때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조명기기 전문위원회에서는 업체별, 재질별로 전부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함.
- ⑤ [별표 5]에 세부 범위에 '구분' 에 4개중에는 1번에는 '전기적인 1차회로와 2차회로 사이에 사용되는 부품' 이라고 되어 있고, 1번의 '구분' 에는 4가지가 있음, '소켓이 연결된 안정기' 를 설명해주기 바람, 이 항목이 안정기와 소켓이 연결된 안정기를 안정기의 파생모델로 인증을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됨
- ⑥ 소켓이 연결된 안정기는 1개 제품인지? 2개 제품인지?
위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Answer ① 안전인증은 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 및 화재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전이 확보된다면 사회적 수요를 고려하여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전기용품이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되어야 하므로 각각 안전인증을 받은 소켓과 안정기를 전선으로 연결한 제품은 소켓 또는 안정기를 기본모델로 하여 파생모델 등록이 가능합니다.



② 전자식안정기 제조업체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전체적으로 알려드릴 경우 기업의 정보가 부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어 인증기관에서는 민원인이 필요한 업체를 개별 검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증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③~④ 파생모델 등록을 위해서는 사용된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부품별로 제조업체 및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외관 재질이 변경된 경우 난연성 및 내열성 등의 필요한 시험을 거쳐 파생모델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⑤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8의 세부범위에서 구분 'I' - 범위 '라'의 세부범위에만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의 세부범위를 준용' 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동 항목만 동 요령 별표7의 내용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별표8은 안전인증을 받는 각각의 제품에 대한 규정으로 소켓 또는 안정기 등 각각의 안전인증 대상제품에 적용하는 것이며 '소켓 부착 안정기'는 위의 1번 답변과 같은 사유로 파생모델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⑥ 소켓과 안정기가 영구 부착된 '소켓 부착 안정기'는 1개의 제품입니다.

Q

Question 전기가열온수방식의 온열기는 안전인증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제품 내부는 따뜻함을 유지하고 부드러움을 제공하는 액체로(3% 소금물) 채워져 있으며, 약 두 시간을 자동온도조절 기능을 통해 안전하게 따뜻함을 유지하는 전기가열 온수 방식의 온열기가 안전인증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사용방법 :** 부드러운 의자에 온열기를 올려놓고, 겉 커버를 써운 상태에서 전원을 연결하고 약 5~8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표시등이 꺼지고 작동이 멈추게 됨. 이때 온도가 약 65~70°C 정도임, 온수팩이 차가워지면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면 됨.
- **제품제원 :** 정격전원 - AC 220~240V, 주파수 - 50Hz, 소비전력 - 600W

SAFETY GUIDE Q&A

Answer '전원을 연결하여 제품 내부에 있는 발열체를 가열하고 전원선을 제거한 후, 인체의 원하는 부위를 찜질하거나 보온 효과를 갖고 있는 축열식 이동 뜸질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품목 중 '전기뜸질기'에 해당되므로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Q uestion 국내 인증이 없는 스위치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제조할 수 있나요?

후드믹서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부품 중 자동복귀형 locker switch를 사용하려고 하지만 현재 국내 ek인증을 받은 부품이 없어 유럽 VDE인증을 받은 부품을 CB성적서와 함께 제출하였으나 국내 ek인증을 받은 부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제품에 장착된 부품의 이상 유무에 대한 별도의 시험을 요청하였으나 이마저도 거부된 상태입니다.

부품업체에서는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을 의향이 전혀 없고 본사는 반드시 그 부품을 써야하지만 국내의 인증 받은 부품은 없으므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국내 인증없는 부품을 적용한 제품을 그 부품의 적합성 시험을 통하여 제품 인증을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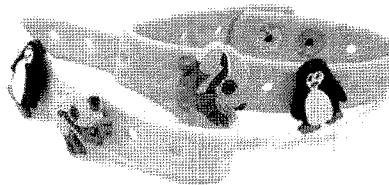
Answer '후드믹서의 부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인 로커스위치(Locker switch)'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므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완제품에 부품으로 사용하는 전기용품(스위치 등) 국내외에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가 없어 인증된 부품을 구입할 수 없는 경우 제품생산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수한 경우에 한정하여 안전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Q uestion 어린이용 귀금속악세사리의 자율안전확인 대상 품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어린이용 귀금속악세사리의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자율안전확인대상 '어린이용 귀금속악세사리'는 재질에 따라 섬유제, 플라스틱제, 금속

제, 목제, 용도에 따라 반지, 목걸이, 팔찌, 장식용 체인, 기타 장식용품으로 구분되며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금속제’의 범위에는 금속재료 등에 금, 은 등의 귀금속을 도금한 (plate) 아동용 목걸이, 팔찌 등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도금상태가 아닌 금(함량이 58.5% 이상(14, 18, 24K)), 은 제품 및 금장 (field)으로 되어 있는 귀금속 악세사리 제품, 그리고 피부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머리핀, 폰 줄은 자율안전확인대상 ‘어린이용 귀금속악세사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uestion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표시방법이 궁금합니다.

섬유제품분야의 안전·품질표시사항 중 개별제품의 포장 또는 꼬리표, 스티커 등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Answer 섬유제품(모자)은 「품질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24조에 의한 안전·품질표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별제품”과 “개별제품의 포장 또는 꼬리표, 스티커 등의 표시”에 있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사항은 안전·품질표시대상공 산품의 표시기준(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35호)의 4.2.2에 의하여 “4.2.1의 표시사항 중에서 4.1.1의 규정에 따라 개별제품에 표시한 사항은 포장 또는 꼬리표, 스티커 등에 해당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상기 기준에서 섬유제품의 “제조년월, 치수는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표시해야 할 사항은 아니나 소비자들이 제품 구입 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